

제 호	
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(종합상사 및 단체용)	
업체명	대표자
소재지	전화번호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임무를 고지하니 자체 실시계획 작성 등 전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 다 음 - 전시 고유업무 및 위임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 - 관련 동원업체 지원계획 수립 -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명하는 사항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	

자 르 는 선

제 호		
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		
업체명	대표자	
소재지	전화번호	
수령인	성명 (서명 또는 인)	대표자와의 관계
	수령일	수령 장소